

節稅를 위해 알아둬야 할 稅法

2000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주요내용

자료제공 : 공인회계사 김병익
[문의전화 : 567-0586]

■ 정규 지출증빙의 수취

1)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빙이 없으면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본 사항은 지난 1998년 세법이 개정되었으나 2000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①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③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④ 공매, 경매,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⑤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⑥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⑦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4) 현실적으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PC통신판매, 우체국을 이용한 주문판매 또는 간이과세자인 건물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구좌입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명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 중 영수증 수취분에 대하여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접대비 관련

1) 접대비의 경우 건당 5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접대비 이외의 경우 정규지출증빙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도 비용은 인정하고 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나 접대비의 경우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본 사항은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법인이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중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도 접대비로 인정하여 한도내의 금액은 손비로 인정해오고 있으나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손비 부인하며 2001년부터 적용된다.

3) 기밀비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기밀비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다.

4)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 한도액이 1999년에 비해 50% 축소된다.

■ 부가가치세 관련

1)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분류

2) 개인사업자인 신용카드전표 발행세액 공제율이 1%(연 300만원 한도)에서 2%(연 500만원 한도)로 확대된다.

3)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2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4) 간이과세자도 금년 7월 1일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세금을 재화로 물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5)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중 지연일수 1일당 5/10,000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연체이자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6) 종전에는 사업개시후 등록한 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개시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 20일내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법인세 관련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면제 및 그후 5년간 50% 감면된다.

2)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된다.

■ 소득세 관련

1) 연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의 경우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가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한다. (무기장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10%)

2) 근로자가 지출하는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로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 배당세액 공제시 공제한도가 19/100로 축소되어 법인세 부담율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경우 실질 세액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 양도소득세 관련

1) 양도소득세가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다.

2)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① 대주주의 범위 : 5% 이상인 지분율에서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② 과세대상 : 3년간 1% 이상 양도의 경우에만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1주의 양도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③ 세율 : 현재까지는 일반주주와 동일하게 적용(20%)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20%~40%)을 적용한다. 또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적용세율을 상향조정한다.

④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기준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격으로 과세한다.

■ 기타

1)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2)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부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당좌대월 이자율(연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한다.

3) 상속세, 증여세의 과소신고 등의 경우 과세부와 제척기간(신고한 경우 10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년)이 폐지된다.

4) 국세 부과에 대한 불복시 현재까지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모두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는 스톡옵션의 연간 행사한도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된다. 단, 2000년 이후 스톡옵션 부여분에 한한다.

6)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지금까지는 그 직전에 비해 늘어난 비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증가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된 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7) 대도시 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에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 제품 판매회사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추가한다.

■ 정규증빙서류 수취의무 안내

[1] 정규증빙서류 수취의무

1) 정규증빙서류란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로 사업자가 수취하여야 할 다음 서류를 말한다.

- ①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 증빙)
- ②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증빙)
-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사업자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 별도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 증빙서류만을 수취해야 하며(소득세법 제160조의 2, 법인세법 제116조) 2000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금액이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자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

[3]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

아도 되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1) 대금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정규증빙서류가 아닌 일반 영수증 등을 거래증빙으로 수취하여도 된다.

- ①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② 거래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③ 금융·보험용역·방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⑤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⑥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⑦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⑧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⑨ 전화세나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⑩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⑪ 공매·경매·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⑫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⑬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⑭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거래

(1)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운송용역·임가공용역 및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2) 기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래(국세청 고시 제99-43호, 1999년 12월 10일)

①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 등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②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③ 국세청장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④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4] 정규증빙서류외의 증빙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

1) 적용대상사업자

①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

② 개인 :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사업자

2) 가산세적용대상

별도로 규정된 거래(위 3항) 외의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거래

3) 가산세 부과

정규증빙서류 수취대상거래에 대하여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참고자료

[1] 거래사례별 지출증빙 서류

수취

1) 간이과세자, 과세특례법인 등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2000년 1월 1일부터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10만원 이상 거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간이과세자·과세특례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다.

2) 10만원 이상 거래의 판단기준

① 10만원 이상 거래 여부의 판단기준은 거래 1건별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 등 일정기간별로 합산하여 지출함에 따라 그 합계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된다.

3)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금으로 10만원 이상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정규증빙서류 수취에 의한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필요 경비(손금)는 인정된다.

4) 금전등기기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10만원 이상 거래시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인터넷·PC통신 또는 우체국을 이용한 주문판매의 경우에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정규증빙서류를 교부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정규증빙서류를 교부받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증빙사용가산세가 면제된다.

6)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건물임차인인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